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02호

2007년 10월 8일 월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44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고시 2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4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4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826호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8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44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인천시 서구관내일원에 재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지적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개 요

가. 지적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나. 좌표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X좌표(m)	Y좌표(m)
「별지참조」			

다.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지적도근점 55점(2007년8월21일~8월30일)

라. 측량성과보관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대한지적공사 인천본부 서구지사

2. 열람안내

- 지적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 지』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원점	X 좌표(m)	Y 좌표(m)
20	지적도근점	계양	-3877.03	-3156.10
21	지적도근점	계양	-3788.82	-3098.18
22	지적도근점	계양	-3656.91	-2954.28
23	지적도근점	계양	-3711.57	-2904.37
54	지적도근점	계양	-5097.82	-4036.56
65	지적도근점	계양	-5099.98	-3980.53
66	지적도근점	계양	-5104.74	-3911.38
74	지적도근점	계양	-4785.74	-3897.66
79	지적도근점	계양	-4719.45	-3895.50
85	지적도근점	계양	-5043.34	-3908.34
88	지적도근점	계양	-5170.71	-4040.08
93	지적도근점	계양	-5115.44	-3677.30
94	지적도근점	계양	-5121.57	-3570.97
106	지적도근점	계양	-5457.60	-3587.14
107	지적도근점	계양	-5421.59	-3584.55
113	지적도근점	계양	-5545.06	-3698.05
118	지적도근점	계양	-5452.19	-3694.32
121	지적도근점	계양	-5463.28	-3487.83
124	지적도근점	계양	-5426.98	-3486.22
253	지적도근점	계양	-5373.29	-3583.25
255	지적도근점	계양	-5185.00	-3475.22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원점	X 좌표(m)	Y 좌표(m)
256	지적도근점	계양	-5062.83	-3467.89
257	지적도근점	계양	-5058.79	-3567.88
269	지적도근점	계양	-4779.79	-4020.73
272	지적도근점	계양	-4656.10	-3892.39
273	지적도근점	계양	-4662.01	-3782.94
280	지적도근점	계양	-5053.42	-3675.35
281	지적도근점	계양	-5126.73	-3470.80
286	지적도근점	계양	-5181.14	-3573.34
289	지적도근점	계양	-4598.68	-3780.42
297	지적도근점	계양	-4118.15	-3266.41
298	지적도근점	계양	-4078.66	-3266.02
299	지적도근점	계양	-3940.74	-3201.69
303	지적도근점	계양	-3778.83	-2851.90
399	지적도근점	계양	-7115.99	-2745.54
400	지적도근점	계양	-7085.55	-2687.02
401	지적도근점	계양	-6918.01	-2579.77
402	지적도근점	계양	-7041.73	-2503.30
407	지적도근점	계양	-7504.02	-2465.69
408	지적도근점	계양	-7534.44	-2493.86
411	지적도근점	계양	-7492.04	-2728.17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원점	X 좌표(m)	Y 좌표(m)
412	지적도근점	계양	-7186.10	-2706.70
414	지적도근점	계양	-7305.01	-2616.13
417	지적도근점	계양	-7485.32	-2546.58
419	지적도근점	계양	-7580.27	-2633.56
445	지적도근점	계양	-7463.23	-2760.00
446	지적도근점	계양	-7434.38	-2787.31
450	지적도근점	계양	-7410.48	-2765.11
472	지적도근점	계양	-7348.14	-2727.65
479	지적도근점	계양	-7385.17	-2689.74
480	지적도근점	계양	-7414.92	-2657.82
494	지적도근점	계양	-7398.17	-2642.84
495	지적도근점	계양	-7367.50	-2615.02
497	지적도근점	계양	-7336.15	-2584.03
498	지적도근점	계양	-7279.98	-2648.35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4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25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사항으로 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률 제32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00	가좌 대2-35	가좌 305-5	일반 도로	가좌동	1982. 04.14	
변경	소로	2	21	8	특수 도로	100	가좌 대2-35	가좌 305-5	보행자 전용도로	가좌동		세부시설 (기능)변경
기정	소로	2	21	8	특수 도로	100	대로 2-35	소로 3-22	보행자 전용도로	가좌동	1976. 08.11	
변경	소로	2	23	8	특수 도로	100	대로 2-35	소로 3-22	보행자 전용도로	가좌동		노선명변경 (소로2-21 →소로2-23)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소로 2-21	소로 2-21 (변경없음)	세부시설(기능)변경	가좌완충녹지 조성과 연계하여 녹지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 및 보행축의 연결 동선 등을 확보
소로 2-21	소로 2-23	노선명 변경	노선명 중복 결정으로 인한 변경

나. 지형도면 : 따로붙임(계재생략)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4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25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사항으로 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률 제32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	국지	220	대로3-38 백석동 22-4	백석동 19-5	일반 도로		백석
변경	소로	3	1	6	국지	220	대로3-38 백석동 22-4	백석동 19-5	일반 도로		도로 모퉁이
기정	소로	3	1	6	국지	514 (424)	공촌동 산30-6	공촌동 11-2	일반 도로		공촌
변경	소로	3	1	6	국지	514 (424)	공촌동 산30-6	공촌동 11-2	일반 도로		도로선형 변경

○ 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모퉁이변 신설(당초 누락) 폭원, 연장 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모퉁이변 조정(신규) 	백 석
소로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선형 일부변경 폭원, 연장 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도로를 포함하여 도로 선형 일부변경 	공 촌

나. 지형도면 : 따로붙임(계재생략)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826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 10. 1 ~ 2007. 10. 15 (15일간)

2. 공고내용

1. 처 분 내 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2. 당 사 자	성 명	등록번호	주 소		부 과 대 상	과징금액	
	안 애 숙	5*****-2*****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378번지 5호		인천 서구 연희동 682-23연희아트빌 402호 외 1필지	₩10,155,650	
3. 위 반 사 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4. 법 적 근 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5. 기타(문의처)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담당자	최지현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곡길 323(심곡동 244)				
		연락처	☎ 032-560-4833, FAX 032-560-4819				
<p>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처분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우리구 토지정보과에서 과징금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납기일(2007.12.14)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